

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임의 건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3. 22. ----- 사하구청장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3. 28.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3. 30.(제12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
위원선임 의결)

2. 제안이유

-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, 협의체 구성원 중 주민대표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관할 구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던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2004. 8. 10 폐기물 소각시설의 주변영향지역(주변영향지역이 지정·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각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)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구의회가 선정토록 개정되었고
- 부산광역시기 기존 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중 사의를 표하였거나, 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6인에 대하여 위원직을 해촉하고 개정 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한 주민대표위원 6인을 선정 요청함에 따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위원선임 대상자가 추천되었기에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임.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4. 토 론 요 지 : 생 략

5. 심 사 결 과

- 사하구청장이 추천한 6인의 후보자 전원을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임
- 선임된 주민대표위원

연번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비고
1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
2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
3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
4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
5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
6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